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편집 : 문화공보관 심계섭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설
 전화 75-6090

제 754 호
 1980. 2.25

시 보

잡 래



◎ 조 례

제 1407 호 :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제 1408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도건설법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4

◎ 규 칙

제 1846 호 :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개정규칙..... 5

◎ 고 시

제 62 호 :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지적승인..... 9

제 67 호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일부변경및지적승인..... 9

제 68 호 :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시행허가..... 10

<이면 계속>

1. 시 공무실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공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제 69 호 :	도시 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0
제 70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 유수지) 결정및 변경지적승인.....	11
제 71 호 :	도시 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	12
제 72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 변경지적승인.....	12
제 73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3
제 74 호 :	도시 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	13
제 75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및광장) 지적승인.....	14
제 76 호 :	도시 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15
제 77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및하수도) 결정및 변경과지적승인.....	15
제 78 호 :	무교, 다동, 서린구역재개발사업계획변경지적승인.....	16

㉡ 공 고

제 45 호 :	도시 계획사업 (가스공급설비) 완료공고.....	22
제 46 호 :	특별정소지역제외 (비수거) 지역지정변경공고.....	23
제 48 호 :	80 년도시을특별시제안모집공고.....	23
제 49 호 :	도시 계획사업 (시장) 시행계획공람공고.....	24
제 50 호 :	도업재개발구역제 6, 7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26
제 51 호 :	도시 계획사업 (학교채련장조성사업) 시행허가준공.....	26
제 52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27
제 53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30
제 54 호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31
제 8 호 (강동구공고)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31
제 41 호 (강남구공고) :	공인개각사용공고.....	32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원
1980.2.25

◎ 서울특별시조례제 1407 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중 2.가.(인허가)
제13호 다음에 제14호내지 제24호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나.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중 제23호를 제25
호로 하고 제23호 및 제24호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중 현행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
고물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때에
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
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
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수수료징수사항	수 량	수 수 료	비 고
14) 입간판 설치허가	1 개 당	2,000 (1,000)	()는 허가 갱신 수수 료 (이하같다)
15) 현수막 설치허가	"	5,000 (3,000)	
16) 프랑카드 설치허가	"	5,000 (3,000)	
17) 에드바문 설치허가	"	5,000 (3,000)	
18) 돌출광고물 설치허가	"	20,000 (10,000)	높이 2 미터이상 또는 조명 및 전기장치 부 착분은 2배
19) 봉연광고물 설치허가	" (15일이내)	5,000 (3,000)	가. 15일이상 2배 나. 30일이상 4배

수수료징수사항	수 량	수 수 료	비 고
20) 전주, 가로등주이용 광고물 설치허가	100 개당	10,000 (5,000)	가. 100개미만은 100 개 로 간주 나. 매 100개 초과수량은 50에서 4사 5입 1개월이내는 5분의 1
21) 차량이용 광고물 설치허가	100 매 당	20,000 (10,000)	
22) 지하철역 광고물 설치허가	1 개 당	10,000 (5,000)	
23) 지하도광고물설치허가	1 회	10,000 (5,000)	
24) 전단공중살포허가	1 회	20,000	

(별지 2)

수수료징수사항	수 량	수 수 료	비 고
23) 벽보지류 설치신고	100 매 당	10,000 (5,000)	()는 신고갱신수수료 가. 50 매이하 공연광고 체육관계 광고등은 2분의 1 나. 비영리적인 것은 제외 (면제) 비영리적인것은 2분의 1
24) 전단신고	1 회	5,00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지하철도 건설법인에 대한 시세과
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80.2.26

◎ 서울특별시조례 제 1408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도건설법인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철도
건설을 촉진하고 도시교통단 완화
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 면
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지하철도 건설촉진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세 대하여는 다음 각호
의 시세과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 지하철도 건설촉진법 제 1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는 지하철도의 시설물의 취득

2. 등록세 : 1) 법인의 설립 증자 및 기타 등기
2) 조세감면 규제법 제 11조의 2 제 3항 및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하철도 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의 등기 또는 등록

3. 면허세 : 지하철도 건설사업의 경영에 전용하는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

4. 사업소세

제 3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과세 면제사무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조 (면제신청) ①이 조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 예술단체 운영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
1980.2.23

○ 서울특별시규칙제 1846 호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 예술단체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조 제 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는 정호봉, 교향악단 지휘자와 각 단체 최고 책임자는 1호봉으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의 악장과 가무단의 연출자는 2호봉으로 한다.

제 9조 (지책수당) "각 예술단체별로" 다음에 "상임지휘자"를 삽입한다.

별표 1, 2, 6, 7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 원 의 종 류 및 정 원

구 분	정 원	구 분	정 원
1. 교향악단 (110인)	가. 상임지휘자 1인	4. 가무단 (50인)	바. 부용수 43인
	나. 자휘자 1인		바. 의상담당 1인
	다. 악 장 2인		가. 지휘자 1인
	라. 총 무 1인		나. 연출자 1인
	마. 제 1 수석 8인		다. 총 무 1인
	바. 제 2 수석 8인		라. 수 석 2인
	사. 제 1 부수석 8인		마. 부수석 2인
	아. 제 2 부수석 7인		바. 반주자 1인
	자. 단 원 71인		사. 단 원 41인
	차. 라이브러리안 2인		아. 라이브러리안 1인
카. 악기편성 1인			
2. 국악관현 악 단 (53인)	가. 지휘자 1인	5. 합창단 (60인)	가. 지휘자 1인
	나. 악 장 2인		나. 총 무 1인
	다. 총 무 1인		다. 수 석 4인
	라. 수 석 4인		라. 부수석 4인
	마. 부수석 4인		마. 반주자 1인
	바. 단 원 40인		바. 단 원 48인
	사. 라이브러리안 1인		사. 라이브러리안 1인
3. 무용단 (50인)	가. 안무자 1인	6. 소년소녀 합창단 (122인)	가. 지휘자 1인
	나. 총 무 1인		나. 반주자 1인
	다. 수 석 2인		다. 단 원 120인
	라. 부수석 2인		(무급)

< 별표 2 > 급 여 월 액

호봉	교향악단	기타예술단체	호봉	교향악단	기타예술단체
정	385,000		18	244,000	118,000
1	359,000	256,000	19	236,000	113,000
2	353,000	244,000	20	229,000	107,000
3	347,000	232,000	21	221,000	101,000
4	340,000	220,000	22	214,000	92,000
5	334,000	209,000	23	206,000	80,000
6	327,000	198,000	24	199,000	
7	321,000	190,000	25	193,000	
8	315,000	184,000	26	183,000	
9	308,000	176,000	27	172,000	
10	302,000	169,000	28	157,000	
11	295,000	162,000	29	143,000	
12	289,000	156,000	30	128,000	
13	281,000	149,000	31	113,000	
14	274,000	142,000	32	101,000	
15	267,000	136,000	33	92,000	
16	259,000	130,000	34	80,000	
17	252,000	124,000			

직 제 수 당

(단위 : 원)

구분	인원	실적배수당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1	80,000
" 지휘자	1	70,000
" 악장	2	60,000
" 총무	1	60,000
" 제 1 수석	8	50,000
" 제 2 수석	8	40,000

(단위: 원)		
구 분	인 원	월 직책 수 당
교향악단 제 1 부수석	8	30,000
" 제 2 부수석	7	20,000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1	90,000
" 악 장	2	60,000
" 수 석	4	50,000
" 부수석	4	30,000
기타단체지휘자(안무자)	4	60,000
가무단 연출자	1	30,000
기타단체 수석	7	10,000
총 무	4	40,000

예능연구보조비월액

호 봉	교향악단	기타예술단체	호 봉	교향악단	기타예술단체
정	203,000		18	120,000	59,000
1	187,000	129,000	19	117,000	55,000
2	182,000	123,000	20	113,000	52,000
3	177,000	118,000	21	110,000	49,000
4	173,000	112,000	22	107,000	40,000
5	169,000	106,000	23	104,000	35,000
6	165,000	99,000	24	101,000	
7	160,000	96,000	25	98,000	
8	156,000	91,000	26	92,000	
9	152,000	88,000	27	87,000	
10	148,000	85,000	28	79,000	
11	143,000	82,000	29	71,000	
12	139,000	78,000	30	65,000	
13	136,000	75,000	31	57,000	
14	133,000	72,000	32	49,000	
15	129,000	68,000	33	40,000	
16	126,000	65,000	34	35,000	
17	123,000	62,000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62 호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4 호 (1980. 1.19) 로 도시계획 미관지구변경

1980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및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미관지구 변경 지적승인 조서

구분	종별	연장	면적	위치	비고
기정	2-29	2,200m	726,000㎡	서초동-영동지구48구획	양측 12m
변경	2-29	2,200m	88,000㎡	" "	(위치조정) 양측 20m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67 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21

서울특별시장

○ 시설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및규모	비고
기정	154kv 광장 분기송전선로	154kv 광장변전소 -	연장 2.9 km	연장 40m 중철탑 1기 위치변경, 철탑 1기 증설
변경	"	기설화양송전선로(중부동)	절입 10기 연장 2.94 km 철탑 11기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68 호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시 행 허 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67 호 (80.2.21) 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일 부 변경 및 지적승인된 154kv 광장 분기 송전선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칙시행령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21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성동구 광장동 산 74-27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154kv 광장 분기 송전선로 공사
- 3)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3 가 11-5 한국전력주식회사 서울전력관리본부 본부장 김차경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일 : 1979.1.18

나. 준공예정일 : 1980.9.30

5)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가. 전장 : 2,940 m

나. 규모 : 철탑 11 기 (195 평)

6)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별첨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 별첨 (별첨생략)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6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63 호 (78.7.24)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2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강동구 가락동 398-1의 12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 계획 사업 (학교) 일신중고등학교 (변경 : 추가)
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37,214 평방미터 (11,257 평) (추가 = 16,001 평방미터 (4,840 평))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락동 412-5 학교법인 서울학원 이사장 이해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80.2.25
 나. 준공 예정일 : 80.11.30
6. 사물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7.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0 호

도시 계획 시설 (도로, 유수지)
결정 및 변경, 지적승인

1. 도시 계획 시설 (도로, 유수지)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 계획 법 제 12 조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 도서는 관할 구청 도시 정비 과와 시민 봉사실에 각각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22

서울특별시 장

○ 시설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폐지	유수지	강남개포동 313 일대	73,719 m ²	
신설	"	강남대치동 74 일대	94,500 m ²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대로	3		25m	1,200m	강남대치동 307 부력	대치동 13번지	
기정	"	3		25m	500m	강남대치동 478 부력	대치동 481 부력	
변경	중로	3		15m	500m	"	"	폭원 축소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1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5 호(80.2.13)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시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463 호 (79.12.10) 의 위임

- 사항에 의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23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조서

구분	시장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기여소매시장	강동구마천동 181-2	4,084 평방미터	
		" 182-1	(1,236평)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09 호(79.3.7)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41 호(77.3.16) 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이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은평구청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

서울특별시 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지적 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22	30	8,500	녹번동 (대1-12)	신도면원흥리 (광 24)	
변경	"	2	22	30	8,500	"	"	녹번동 48-7 각각정리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3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호 (80.1.23)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

- 12.10)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2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6미터	64미터	시흥동산 53	시흥동산 53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4 호

도시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2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적승인조서

구분	종별	연장(m)	면적(m ²)	위치	비고
기정	2	2,000	62,400	본동광장 - 국립묘지 (이수광장)	
변경	2	2,000	80,000	본동광장 - 국립묘지 (입구)	양측 20 m
기정	2	2,600	62,400	동작동 - 남성동 (사당 4거리)	
변경	2	2,600	104,000	동작동 - 남성동 (사당 4거리)	양측 20 m
기정	4	600	14,400	사당동 - 원각사	
변경	4	600	18,000	사당동 - 원각사	양측 15 m

구 분	종 번	연 장(m)	면 적(m ²)	위 치	비 고
신 설	2	80	1,600	노량진수원지 건너편 - 노량진 터널입구가각 (구역변동)	양측 20 m
신 설	4	3,470	104,100	노량진터널입구가각 - 봉천동 노타리	양측 15 m (터널제외)
신 설	4	500	15,000	방배동 113 부력 - 방배동 152 부력	양측 15 m
기 정	4	4,100 중 1,050	98,400	방배동 - 상도동	양측 12 m
신 설	4	4,100 중 1,050	31,500	방배동 151 부력 - 사당동 708 번지	양측 15 m (위치조정)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7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제 426호(78.12.29)로 결정고시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및광장)을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 하엿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사항에의거 이를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27

서울특별시장

○ 도로지적승인조서

구 분	등 급	번 호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지적승인	광 로	21	50 m	6,700 m	제 3 한강 교남단	양재제 3 광 장	2,000 m 지적승인

○ 광장지적승인조서

구 분	광 장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지적승인	양재제 3 광장	강남구 양재동 251 일대	26,000 m ²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76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45호(80.2.13) 로 시설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71호(80.2.13)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시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호(79.12.10)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 1과와 강동구청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2.2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동구마천동 181-2, 182-1 호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기여소매시장)
3.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강동구마천동 181-2, 창원실업주식회사 대표 전 길 동
4. 사업의규모및명칭 : A = 4,084 m²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80. 3. 2.
나. 준공예정일 : 80.12.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소유자	
				주소	성명
강동구마천동	181-2	대	4,084	강동구마천동 181-2	창원실업주식회사
"	182-1	대			

7. 위치및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8.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7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및하수도)
결정및변경과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2.28.
서울특별시장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67 m	강서구목동 406	목 동 406	위치변경
변경	"	"	67 m	"	"	
신설	"	3	144 m	강동구풍납동 163	풍납동 166	
폐지	"	"	140 m	관악구신림동 223-3	신림여중정문	폭원확장
기정	"	"	120 m	" 230-1	신림동 224-2	
변경	"	2	120 m	" "	"	
신설	"	2	150 m	" 230-10	신림여중정문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하수도조서

구분	시설명	규 모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하수도	B=3 m, L=150m	광장동 352	광장동 197	지적승인
신설	하수도	B=2.5m, L=152m	" 303	"	포 합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78 호

무교, 나동, 서린구역재개발사업
계획 변경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제 46호 (80.2.12) 에
의거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무교, 나동, 서린구역에 대하여 도
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청과 관
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에게 보인다.

1980. 2.29.

서울특별시장

가. 무교 구역

1) 지구별계획 변경 결정조서

기			변				
지구별	위	치	면적(㎡)	지구별	위	치	면적(㎡)
7	무교동 1-3	번지일대	1,188	7	무교동 1-3	번지일대	1,047
8	" 10	"	1,062	8	" 10	"	1,010
9	" 12-1	"	1,465	9	" 12-1	"	1,386
10	" 17	"	1,525	10	" 17	"	1,491
11	" 20	"	1,940	11	" 20	"	2,004

2) 도로계획 변경결정조서

구분	노	선	명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1	류 9	호	8	37	무교동 9-1		무교동 10			
변경	"	"	4 호	8	37	" "		"			
신설	충로 2	류 204	호	15	37	" 13		" 14			
신설	"	"	205 호	15	37	" 22-4		" 1-20			무교구역에 포함 지구내 8-10 m

나. 다동구역

1) 구역변경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		비	고
			기	적		
			정(㎡)	변(㎡)		
다동구역	중구나동일대		59,000	50,500		기개설도로 8,500㎡감

2) 지구별계획변경결정조서

기			변			비	고	
지구명	위	치	지구명	위	치			
		면적(㎡)			면적(㎡)			
1	다동 9	번지일대	1,775	1	다동 30	번지일대	1,594	지구계조정
2	" 39-1	"	1,940	2	" 31-1	"	1,444	"
3	" 31-1	"	1,802	3	" 40	"	1,240	"
4	" 49	"	1,070	4	" 35	"	1,541	"

기 정			변 경			비 고
지구명	위 치	면적(㎡)	지구명	위 치	면적(㎡)	
5	다동 52 번지일대	911	5	다동 169 번지일대	2,241	7, 8 지구합병조정
6	" 53 "	2,060	6	" 130 "	2,374	9 지구변경
7	" 170-2 "	1,082	7	" 184 "	1,360	13 "
8	" 165 "	1,386	8	" 158 "	1,491	12 "
9	" 130 "	2,617	9	" 147-1 "	1,616	10 지구조정
10	" 145 "	1,142	10	" 10 -1 "	2,915	15, 16, 17 지구 합병조정
11	" 151 "	1,082	11	" 70 "	2,157	18, 19 " 1
12	" 156 "	1,792	12	" 94 "	1,437	22 지구변경
13	" 184 "	1,702	13	" 97 "	1,057	23 "
14	" 2-1 "	1,734	14	" 125 "	1,330	24 "
15	" 50-1 "	1,802	15	" 124 "	1,353	25 "
16	" 67-1 "	693	16	" 2-1 "	2,106	14 "
17	" 57-2 "	676	17	" 89-1 "	1,449	21 "
18	" 70 "	1,577	18	" 106 "	1,075	27 "
19	" 75 "	696	19	" 108 "	1,121	26 "
20	" 89-1 "	1,911				
21	" 94 "	1,529				
22	" 96 "	1,028				
23	" 124 "	1,307				
24	" 120 "	1,313				
25	" 108 "	1,663				
26	" 106 "	1,782				

3) 주차장계획 변경결정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구 분	위 치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제 1 주차장	다동 45-1 번지일대	1,351	제 1 주차장	다동 165-1 일대	1,760	감 1,727㎡
제 2 주차장	" 165-1 "	1,678	제 2 주차장	" 124 "	1,200	
제 3 주차장	" 68 "	1,014	제 3 주차장	" 77 "	495	
제 4 주차장	" 123-1 "	1,139				

4) 공원계획변경결정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명칭	위 치	면적(m ²)	명칭	위 치	면적(m ²)	
다동 공원	다동 59-2일대	2,878	다동 공원	다동 51일대	3,947	증 1,069 m ²

5) 도로계획변경결정조서

구분	노 선 명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충로 2류 204호	15	236	무교동 14	다동 28-3	지구내폭 7.5 m ² 해당
"	" 205호	15	235	다동 192-7	" 111	
"	충로 3류 155호	12	206	" "	" 27	
"	" 156호	12	210	" 143	" 61-1	
"	" 157호	12	39	" 153	" 154	
"	소로 2류 1호	8	35	" 77	" 8-1	
기정	소로 3류 15호	6	35	" 92	" 99-2	
변경	소로 2류 2호	8	35	" 99-2	" 92	
기정	" 6호	8	40	" 129-6	" 113	
변경	" 3호	8	34	" 114	" 111	
기정	" 7호	8	45	" 150	" 104-1	
변경	" 4호	8	32	" 101-2	" 124-1	
기정	소로 3류 17호	6	47	" 137	" 149-1	
변경	" 1호	6	40	" 149	" 138	
기정	" 16호	6	40	" 117	" 98-2	
변경	" 2호	6	40	" 127	" 124-1	
폐지	소로 2류 1호	8	92	" 22-2	" 61	
"	" 2호	8	105	" 129	" 143	
"	" 3호	8	107	" 109	" 62-2	
"	" 4호	8	40	" 185-5	" 192-11	
"	" 5호	8	42	" 154-1	" 154-3	
"	" 8호	8	30	" 10-3	" 10-4	
"	" 9호	8	38	" 10	" 9	

구분	노선명	폭원(m)	인정(m)	시점	종점	비고
폐지	소로 3 류 10호	6	104	다동 27	다동 148	
"	" 11호	6	35	" 123	" 182	
"	" 12호	6	40	" 51-1	" 46	
"	" 13호	6	11	" 66	" 99	
"	" 14호	6	15	" 77-2	" 79-3	

다, 서린구역

1) 구역변경 결정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서린구역	서린동 일대	52,000	33,000	기개설도로 19,000㎡감

2) 지구별 계획변경 결정조서

기정			변경			비고
지구명	위치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	
1	서린동 131번지일대	2,416	1	서린동 131일대	2,876	13지구합병
2	" 143 "	1,808	2	" 143 "	1,249	
3	" 111-1 "	1,033	3	" 111-1 "	985	
4	" 113 "	825	4	" 113 "	790	
5	" 129 "	934	5	" 129 "	899	
6	" 107-1 "	1,561	6	" 107-1 "	1,266	
7	" 114-2 "	1,274	7	" 114-2 "	1,286	
8	" 104 "	1,297	8	" 104 "	1,253	
9	" 99 "	1,571	9	" 99 "	1,524	
10	" 70 "	1,310	10	" 70 "	1,353	
11	" 57 "	1,518	11	" 46, 57 "	2,450	
12	" 39 "	6,814	12	" 39 "	6,641	
13	" 46 "	1,210		" "		
17	" 39 "	2,584	17	" 139 "	2,334	
18	" 54-1 "	2,202	18	" 154-1 "	1,686	

3) 주차장 계획변경결정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구 분	위 치	면적(m ²)	구 분	위 치	면적(m ²)	
제 1 주차장	서린동112-2일대	799	제 1 주차장	서린동112일대	799	증1,079m ²
제 2 주차장	" 39-7 "	301	제 2 주차장	" 63 ~	1,380	

4) 공원계획변경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구 분	위 치	면적(m ²)	구 분	위 치	면적(m ²)	
서린공원	서린동79일대	1,578	서린공원	서린동82일대	1,740	증162m ²

5) 도로계획변경 결정조서

구 분	노 선 명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1 류 1 호	10	55	서린동 158	서린동 131	노선명변경
기정	소로 2 류 3 호	8	14	" 109	" 109	
변경	" 1 호	8	14	" 109	" 109	
신설	" 2 호	8	31	" 60	" 58-2	
기정	소로 3 류 4 호	6	60	" 99	" 114-2	
변경	" 3 호	6	60	" 99	" 114-2	
신설	" 4 호	6	48	" 43	" 62	
폐지	소로 2 류 1 호	8	50	" 66	" 26	
"	" 2 호	8	25	" 60	" 68	
기정	광로 1 류 2 호	50	2,750	광로 1 류 4 호	광로 2 류 17호	
변경	" 2 호	50	2,750	"	"	서린동 1-2 면지가각확장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45 호

도시계획사업 (가스공급설비)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10호(79.3.8)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가스

공급설비) 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
 법제 57 조의 2 및 건설부고시제 463호
 (79.12.10)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2.22.
 서울특별시장

사 업 개 요

가.

구 분	항 목	당 초	변경 (정 산)
1	사 업 시 행 지	강남구대치동3-4	강남구대치동 27-1
2	사업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가스 공급설비) (공장 및 사무실)	과 동
3	사 업 시 행 자	강남구 논현동 24-16 대한도시가스(주) 황 순 필	강남구대치동 27-1 대한도시가스(주) 황 순 필
4	사 업 기 간	78.11.10 ~ 81.12.31.	78.11.10 ~ 80. 2.14.
5	사업시행면적	60,385 m ²	과 동
6	준공검사년월일		1980. 2.14.
7	준공도면		생 략

나				
구분 번호	항 목	당 초	변 경 (정 산)	
1	사 업 시 행 지	강남구 대치동 27-3	좌	동
2	사업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가스공급설비 (검사및 안전설비))	좌	동
3	사 업 시 행 자	종로구 관철동 45-1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용식	강남구대치동 27-3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용식
4	사 업 기 간	79.3.10-80.9.30	79.3.10-80.1.27	
5	사 업 시 행 면 적	8,678 m ²	7,998 m ²	
6	준공검사년월일		80.2.14	
7	준 공 도 변		생	략

제 2 안 공고안
 ◎서울특별시 공고제 46 호

특별청소지역제외 (비수거)
 지역지정 변경공고

오물청소법 제 3 조제 1 항 및 동법시

행령 제 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제 14 호를 다음과 같
 이 변경공고한다.

1980

서 울 특 별 시 장

변경지정

구 별	동 별	지 역	당 초	변 경
강남구	일 원 동	전 지 역	비수거 지역 지정	
강서구	과 해 동	"	"	
도봉구	중 계 동	"	"	수거지역으로 지정
강동구	하 일 동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48 호

'80 년도서울특별시제안모집공고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업무처리규정제

2 조 1 항에 의거 제안모집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제도의 목적
 - 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의 장려개발
 - 나.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
 - 다.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증진
 - 라. 사기양양
2.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 가. 자유제안 : 제안자가 직접 제출
 - 나. 직무제안 : 소속기관장(분청은 소속국장)의 추천을 받아기관장이 제출
 - 다. 지정제안 : 제안자가 직접 제출
 - 환경오염방지대책
 - 주택공급확대방안
 - 도심교통체증해소방안
 - 행정의 전산화촉진방안
 - 구, 동행정개신방안(조직, 인력, 재료)
3. 제안자의 자격 : 서울특별시공무원(임시직포함)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4. 모집기간 : 년중수시
5. 제출서류(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참고)
 - 가. 제안서(제1호서식) 3부
 - 나. 제안내용설명서 3부
 - 다. 경비절감산출내역서 3부
 - 라. 직무제안추천서(직무제안에 한함) 3부
6. 접수

- 가. 접수처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담당관실
 - 나.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다. 동일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함.
7. 창안등급 및 부상
 - 가. 금상 : 1창안당 2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나. 은상 : 1창안당 1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
 - 다. 동상 : 1창안당 50만원이상 150만원이하
 - 라. 장려상 : 1창안당 30만원이상 60만원이하
 8. 우수창안채택자에 대한 특전
 - 가.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부여(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제23조)
 - 나. 서훈, 표창, 모범공무원선발(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제22조제2항)
 9.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정개발담당관실로 문의할것.

일반전화 : 72-5209, 75-6403

구내전화 : 418,340,651
- ◎ 서울특별시 공고제 49 호
-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44 호 (80.2.13)

<p>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대치동 623,624 번지시강개설구간내에 저촉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한다.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p> <p>2.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p> <p>3. 관련도서는 강남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0. 2. 시 울 특 별 시 강</p>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략 개 요</p> <p>가. 사업시행지: 강남구대치동 623,624 번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 다. 사업의 규모: 1,324.5 평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동대문구 신설동 101-7 범화종합상가(주) 대표이사 김 노 언</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p>1) 착수예정일: 1980. 4 2) 준공예정일: 1980. 10</p> <p>바.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사. 사방 또는 수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별첨)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방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자.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p>
---	--

토 지 개 목 조 서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남구대치동	623	전	2,254	서울시도봉구 쌍분동 421	신병섭	영등포구신도림동 1099-19 도봉구수유동 270-153	성철제 이춘기
"	624	전	2,241	"	"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50 호

도염제개발구역제 6, 7 지구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367 호 (73.9.6) 로
구역지정되고 동고시제 340 호 (79.9
20) 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된 도염
제개발구역제 6, 7 지구 토지소유자로
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서가 제
출되어 도시재개발법제 15 조의 규정
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에 공한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건축국 재개
발 1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이 공고로서 갈음한다.

1980. 2.27

서울특별시장

1. 공람내용

- 가. 사업명칭 : 도염제개발구역 제 6,
7 지구재개발사업
- 나. 시행위치 : 종로구 당주동 163-10
번지의 56 필지
- 다. 시행면적 : 3,656 m²
- 라. 대지면적 : 2,763 m²

마. 공공용지부담면적 : 893 m²

바. 건축면적

전평 : 1,237 m²

건축연면적 : 19,405 m²

층수 : 지상 10, 지하 3, 옥탑 2 층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

사. 시행자 : 도염제개발구역제 6,
7 지구재개발조합

아. 시행기간 : 시행인가일로부터
82 년 4 월 30 일

자. 공람기간 : 80.2.27-80.3.27

차. 공람장소

- 1) 서울특별시건축국재개발 1 과
(70-2704)
- 2) 서울특별시종로구당주동 163-10
(75-1576, 74-0131)

㉡ 서울특별시 공고제 51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체력장 조성
사업) 시행허가공고

1.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학교부
지조성사업의 준공은 도시계획법제
85 조 및 동법 제 57 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27

서울특별시강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발산동 산 48-6 외 3 필지

2. 사업명: 도시계획사업 (학교부지조성사업)

3. 준공면적: 4,145㎡ (이동전면적) → 3,278.7㎡ (정산면적)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1-58 학교법인 홍신학원 이사장 정희영

5. 사업기간: 착공: 79.4.21
준공예정일: 79.5.31
준공일: 80.2.27

6. 허가번호 및 일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호 (78.1.23)

7. 준공도면: 별첨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5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제 137 호 (77.7.9) 로 고시된 마포로 확장공사 구간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

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공고장소: 마포구청 게시판

나. 공고기간: 1980.3.3-1980.3.17 (14 일간)

1980.3.3

서울특별시강

공 램 개 요

1. 사업장위치: 마포구 도화동 174 의 4 - 48 의 3

2. 사업의종류와명칭: 마포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폭 = 37 미터 - 50 미터
나. 연장 = 420 미터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강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작업인가일 - 80.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별첨.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 계획 사업 계획서</p> <p>1. 사업시행지 : 마포구 도화동 174-4 --도화동 48-3</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마포로 확장공사</p> <p>3. 사업자 개요 및 설명 : 사업개요 : 현재 B = 37 m 도로를 B = 50 m 로 420 m 확장 설 명 : 공덕동 (신민당사앞) - 마포중고앞 육교간 현 재 폭</p>	<p style="text-align: center;">37 m 도로를 50 m 로 확장하는 공사임</p> <p>5. 사업착수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1980.12.31</p> <p>6.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p>
--	---

토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도화동 174-1	대	322	보문동 2가 75-6	이 회 재	
2	-10	"	404.6	도화동 16-14	문 부 용	
3	-11	"	320	"	"	
4	-8	"	47.9	"	"	
5	39-9	"	86.6	33-4	김 성 곤	
6	-10	"	40.3	"	"	
7	-11	"	3.6	중구남대문로2가5	한국전력(주)	
8	-12	"	540.2	도화동 20-1	서 병 용	
9	-13	"	62.5	중구남대문로2가5	한국전력(주)	
10	-14	"	604.6	남대문로5가84-18	동양고속운수(주)	
11	51-4	"	218.2	도화동 51-1	김 회 순	
12	-5	"	248.3	진관외동 236-31	손 숙 희	
13	-6	"	9.6	도화동 33-5	고순이의 24인	
14	50-4	"	751.4	"	고순이의 18인	
15	-5	"	776.9	신공덕동 4	학교법인 중앙의숙외 4인	
16	48-11	"	272.7	도화동 34	김익홍외 4인	
17	-12	"	181.8	마포동 188	학교법인 중앙의숙김주인	
18	-13	"	269.8	도화동 34	김익홍외 4인	
19	-14	"	14.5	" 34-2	서 정 후	

건 물 조 서

연번	지 번	구 조	총 건 평	저축건평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도화동 174-1	철근콘크리트 및 세멘 벽돌평옥개 (다방, 사무실, 주유소)	1층 107.91 2층 82.41 3층 82.41 옥탑 53.80 지하 29.16	1층 12	동대문구보분동 2가 75-6	이 회 재
2	" 39-2-1	목조 및 세멘부록스레트집 (점포, 주택)	30	30	도화동 33-4	김 성 곤
3	" 39-4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공장 및 점포)	1층 135.43 2층 139.18 3층 84.37	1층 60 2층 60 3층 40	도화동 39-4	서 병 용
4	" 39-5	철근조스레트집 (주차장)	123.09	10	중구무교동 32-2	동양고속운수(주)민희
		철근조스레트집 (정비고)	23.17	8	"	"
		철근조스레트집 (수위실)	3.06	3.06	"	"
5	" 51-1	철근콘크리트평옥개및 세멘부록스레트(옥탕)내 3층세멘부록스레트	1층 75.05 2층 62 3층 12.72	1층 40 2층 40 3층 12.72	도화동 51-1	김 희 순
6	" 51-2	세멘부록조도단집(공장)	28	8	성동구신남동 298-25	저 대 환
7	"	목조와즙 (주택)	15.58	15.58	지대문구진관외동 236-31	손 숙 희
8	" 50-1 (구지번33-5)	목조와즙 (주택)	12	12	도화동 33-5	박 기 순
9	"	연와조도단집 (점포)	1층 18 2층 15.25	1층 18 2층 15.25	도화동 171	김 점 용 윤 자 순
10	"	연와조와즙 (창고)	20	12	"	"
11	46-1 50-2 48-1	연와조와즙 (교실)	1층 398.91 2층 391.41	1층 20 2층 20	도화동 41	학교법인 중앙의숙

연번	지 번	구 조	총 건 평	저축건평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2	도화동47-1	세멘벽돌조와즙 (수위실)	4.33	4.33	도화동 41	학교법인 중앙의숙
13	48-3 (7지번34-3)	목조도단즙 (점포)	9.25	9.25	" 34	김 익 홍
14	"	"	1층 3.75 2층 8	1층 3.75 2층 8	마포동 4-1	이 오 경
15	"	"	1층 13.5 2층 9	1층 13.5 2층 9	34-1	김 주 업
16	"	"	1층 13 2층 8	1층 13 2층 8	용강동 48	진 덕 복
17	" 48-4	목조도단즙 (주택)	1층 12 2층 12	1층 1 2층 1	도화동 34-2	서 점 후
18	" 174-1	주유탱크			도화동 174-1	엄 준 영
19	"	주유기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53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0.2.26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 강남구 재개발사업기금분
임정수관인 (건설관리과)
2. 사용개시일 : 1980.3.15
3. 공인의인명

공 인 의 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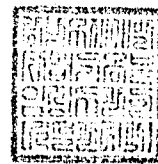
인

영

공

인

명



강남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정
수관인 (건설관리과)

◎ 서울특별시공고제 5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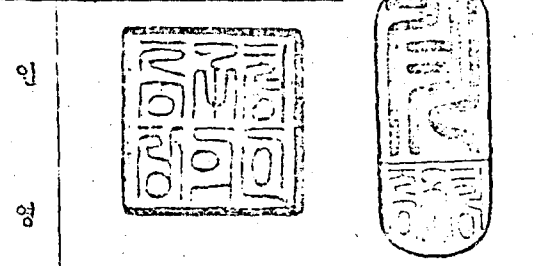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용 아래와 같이 개각 사용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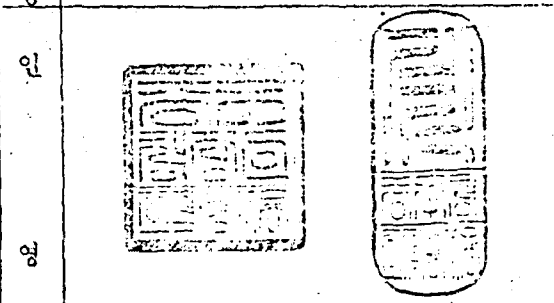
1980.2.25

서울특별시장

- 1. 공인명 : 중구청장인
중구청장인 (호적병사용)
- 2. 사용개시일 : 1980.3.15
- 3. 공인의인영



공인명 중구청장의인및 체인



공인명 중구청장의인및 체인 (호적병사용)

◎ 강동구청공고제 8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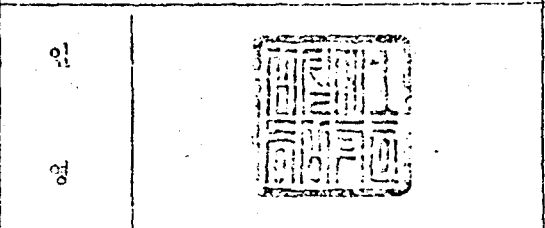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실제 1 동장 공인을 사용승인 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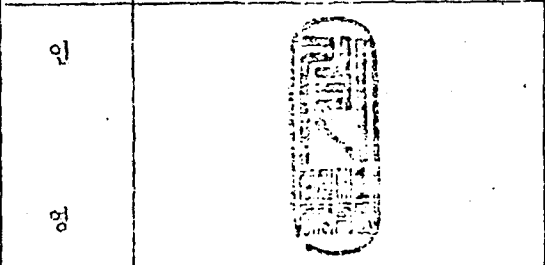
1980. 2 .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공인개각사용 개시일자 : 80.3.1
- 2. 개각된 공인명 : 잠실 1 동장의 직인 및 체인
- 3. 공인개각인영 다음



공인명 잠실제 1 동장의인



공인명 잠실제 1 동장의 체인

○강남구공고제 41호

조례 제 9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공인개각사용공고

1980.2.2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및 계인을 개각 사용 승인하였기 동

1. 개각동인사용개시일시 : 80.3.5.09:00

2. 공인개각동: 논현동

3. 공인의인영

구분	개 각 인 영 (신)		폐 각 인 영 (구)	
	동 장 직 인	동 장 계 인	동 장 직 인	동 장 계 인
논 현 동	